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. 3. 18 선고 2019가단1720 판결 [압류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서울특별시

변론 종결 2020. 1. 15.

판결 선고 2020. 3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. 10.15. 접수 제1056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는 B의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액 합계 26,407,8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9. 10. 15. 강원 영월군 C 임야 82,612㎡ 중 B 명의 2/14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(이하 '이 사건 압류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쳤다. 이후 B는 2014. 3. 25. D에게 위 부동산중 2/14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은 2016. 1. 27. 강원 영월군 C 임야 82,612㎡에서 분할되었다.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D, E이 각 4/14 지분, F이 6/14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.

다. 이후 원고는 2016. 4. 26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공유자들이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시켜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해주지 않고 있다. 또한 피고가 B에게 지방세를 부과한 2000. 12.경부터 기산하여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3. 판 단

가. 살피건대,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B의 피고에 대한 1999년도 귀속분 주민세 등 납부기한은 2000. 12. 31.이고 그 체납액은 합계 18,023,280원인 사실, B의 피고에 대한 2000년도 귀속분 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은 2001. 12. 31.이고 그 체납액은 합계 8,384,5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런데, 피고의 B에 대한 주민세 등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[구 지방세법(법률 제9780호, 2009. 9. 10. 시행) 제30조의5 제1항],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[구 지방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1744호, 2009. 10. 1. 시행) 제14조의3]. 따라서 1999년도 귀속분 주민세 등의 경우 그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. 1. 1.부터, 2000년도 귀속분 주민세 등의 경우 소멸시효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2. 1. 1.부터 각

기산하고,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시점인 2009. 10. 15.(또는 그 등기원인 일자인 2009. 10. 9.)에는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B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B 소유의 다른 금융재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2003. 10. 9.경 B 명의의 G은행, H은행, I은행, J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이를 추심한 후 2004년 및 2006년경 그 압류를 모두 해제한 사실, 피고는 2004. 8. 12.경에도 B 명의 의 K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, 2004. 9. 23. G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, 2008. 8. 26. H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를 하였다가 추심으로 인하여 2004년경 및 2018년경 모두 해제한 사실, 또한 피고는 2006. 9. 26. B 명의의 I은행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추심으로 인하여 2018년경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, 그런데 위 각 압류와 관련된 B의 피고에 대한 체납지방세는 모두 2001년도 귀속분인 주민세로 납부기한이 2001. 9. 30. 및 2001. 12. 31.인 사실, 한편 피고는 2007. 2. 20. 충북 제천시 L 임야 10678㎡ 중 B 명의 2/14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가 2018. 2. 5. 위 압류등기가 공매로 인하여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. 이에 의하면, 피고에 대한 B의 1999년도 귀속분 주민세 및 2000년도 귀속분 주민세등 지방세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바 없고, 달리 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,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방세징수권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박동규

별지

목 록

1. 강원도 영월군		임야 1,398 m ² . 끝.
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